

소중한 나랏돈,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 공공재정지급금 범위에 관한 규정(국민권익위원회 고시)
- 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310-01 (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학금 및 학자금, 민간인보상금, 민간행사지원금, 사회복무요원 보수
310-03 (포상금 등)	포상금 등
320-01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320-07 (이차보전금)	이차보전금
320-11 (학생 및 학생단체이전경비)	청소년단체활동보조금, 학생치료비
340-01 (해외경상이전)	해외경상이전
350-01 (출연금)	출연금, 기타출연금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투자교육지원사업비
620-01 (인건비지원)	계약제교원인건비지원, 무기계약직근로자인건비지원, 기간제근로자인건비지원
620-03 (목적사업비)	목적사업비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620-06 (학교특별교육지원비)	학교특별교육지원비
620-08 (인건비재정결합보조)	인건비 재정결합보조
620-09 (운영비재정결합보조)	운영비 재정결합보조
620-10 (사립학교교육사업비)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사립학교 시설지원
620-13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사립학교특별교육비지원
620-15 (사립학교유아학비지원)	누리과정학비지원
620-16 (사립학교근로자인건비지원)	계약제교원인건비지원,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지원, 기간제근로자인건비지원
640-01 [학교운영비(지원금)]	학부모부담지원금
640-02 [목적사업비(지원금)]	학부모부담지원금
640-03 [운영비재정결합보조(지원금)]	학부모부담지원금
640-04 [사립학교목적사업비(지원금)]	학부모부담지원금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망설이지 마세요.

• 경기도교육청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방문·상담)
 - ☎ 031-820-0865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4층 감사관실」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 http://www.goe.go.kr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공공재정을 올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

• 법 적용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 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

시행령

보조금·보상금·출연금

+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 부정청구의 유형(법 제2조 제6호)

허위청구
(가복)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 할 자격이 있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나복)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 사용
(다복)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라복)

그 밖에 공공재정 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겠습니다.

• 부정이익 환수금액

부정이익 가액

*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 등

이자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

• 제재부가금 부과

허위청구	부정이익 기액의 × 5
과다청구	부정이익 기액의 × 3
목적외 사용	부정이익 기액의 × 2

• 명단공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란?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 부정이익 기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자

명단공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성명, 상호, 나이 및 주소(기관, 법인, 단체는 대표자),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등을 1년간 공표(미납시 계속)

• 행정청(학교 등)의 부정수익자 사례

행정청(학교 등)도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음.

부정청구 사례

교육청으로부터 공립학교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소규모 급식시설개선비를 지원받아 급식실을 개·보수하고 **남은 잔액으로 노후급식기구를 교체하거나 교실 개·보수비용으로 집행**하였을 경우

해당 공립학교는 교육청에 목적사업비 **잔액 반납 또는 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목적의 사용으로 부정이익 환수(이자 포함) 및 제재부가금 부과**(부정이익 기액의 2배)

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호

신분보장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 보장조치 요구 가능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불이익 시정을 위한 인·허가의 짐정적 효력 유지 등 필요조치 요구 가능

신변보호 조치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출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가능

책임감면

부정청구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부정청구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행정처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국민권익위의 징계감면 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신고자의 보상금 및 포상금

보상금 지급신청

신고자의 부정청구 등 신고로 부정이익 등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

포상금 지급

신고자의 부정청구 등 신고로 공공기관에 철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 가능